

제 호

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소재지:
- 대표자:
- 교육훈련과정명:
- 조건:

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직인